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5148821(본소), 2020가단5282318(반소)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 용역비]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나40500(본소), 2021나40517(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가단5148821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판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강규상

변론종결 2021. 4. 30.

판결선고 2021. 6.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2,800,000원 및 이 중 4,4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6. 18.부터, 48,4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8. 3.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매도요청을 받아오던 중,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액이 매매대금의 약 50%에 달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원고의 아들 D은 세금을 덜 내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나. D은 E대학교 건축학과 선배이자 직장 동료인 F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하였고, F는 D에게 F와 같은 대학교 건축학과 동기이자 건축설계 및 감리업체인 피고 회사의 대표자 G을

소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경 D에게 ‘제주시 H동 공동주택 기획안’이라는 제목 아래 ‘총괄 설계개요’와 토지비, 공사비, 분양금액을 산정한 ‘사업성검토’, ‘주요 법규체크’, ‘설계 개요’, ‘배치도’ 등이 포함된 4쪽의 문서를 교부하였다.

라. D은 G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원고를 설득하려면 수지분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G은 2016. 5.경 같은 대학교 건축학과 동기이자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J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부탁하여, 2016. 5. 13. 소외 회사가 작성한 ‘제주 H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계획(안)’(을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을 D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D으로부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의 수지분석표 작성을 추가로 요청받아 2016. 5. 18. 다시 소외 회사가 위 사업계획서 뒤쪽에 추가검토사항을 덧붙여 작성한 사업계획서(을 제12호증)를 D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15쪽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전체의 책임 관리역할을 PM이 맡고, 피고가 건축설계를 맡으며, 소외 회사가 분양을 책임수행하는 사업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바. F는 D의 요청으로 위 PM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K 외 4필지 위에 신축하고자 하는 지상 4층 연면적 5,410㎡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고 한다)과 L 외 1필지 위에 신축하고자 하는 지상 4층 연면적 600㎡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설계용역대금은 합계 2억 2,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할 도서는 각 건물별로 설계도면 3부(건축, 구조, 인테리어, 전기통신, 기계설비, 부대토목), 각종 계산서 1부(구조, 전기통신, 기계설비), 시방서 1부로, 용역업무 내용으로 ‘1 기본계획 : 법규검토, 계획안 구상, 2. 기본설계 : 기본설계도면 작성, 3. 인허가설계 : 인허가도면, 대관업무(심의, 허가), 4. 실시설계 : 실시설계도면, 인테리어 도면, 각종 계산서, 5. 준공도서작성 : 준공도서 및 준공서류’로 정하고 특약사항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였다.

제4조(특약사항)

① 피고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견본주택 및 샘플하우스 건립을 위한 분양 관련 지원 업무

2. 시공 시 구조기술 등 자문 역할

3. 설계 착오 및 현장 여건에 맞게 shop dwg 지원 및 준공도서 납품, 준공서류 지원 업무

4. 묘지 이전 및 필요 시 도로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비용은 원고와 협의 후 진행)

② 묘지 이전절차 완료 전 관련법규가 변경되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엔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피고는 묘지이전 절차 완료 후 (3개월) 1주일 이내에 허가 접수 미이행하여 사업에 영향을 끼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감수한다.

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건물의 설계대금 지급시기를 별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건물의 설계대금 지급시기를 별표2 기재와 같이 각 정하였고, 상대방의 계약 해제·해지 또는 계약위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 원고는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1.경 1,500만 원, 같은 달 12.경 1,500만 원, 같은 달 13.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이 사건 설계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제1, 2건물의 부지 중 제주시 M 묘지 93㎡(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와 N 묘지83㎡(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가 있는데, 제1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O 토지 안에, 제2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K 토지 안에 위치하고 있다.

차. D은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제1, 2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위 묘지들에 각 1기의 무연고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들’이라고 한다)가 존재한다고만 말하였다.

카. 한편 제주도 토박이인 P은 약 6~7년 전부터 D에게 개발이야기를 해주었는데, D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들의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5.경 D의 요청으로 제2토지 위 나무에 ‘묘지 이전 관련으로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1) 토지주 D

010-xxxx-xxxx, 2) B 대학겸임교수 G 소장 010-xxxx-xxxx'라고 기재한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고 한다)을 걸어두었다.,

타. G은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제1, 2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어 F를 통하여 D에게 이를 알렸다.

파. 원고는 2017. 2. 18.경 Q으로부터 제2토지를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Q은 제2토지 위 분묘를 이장하였으나, Q이 위 분묘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못하고 있다.

하. 피고는 2016. 6.경 제주시청 담당 직원과 사이에 '묘지이전을 완료 후 인허가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착공 전 묘지이전을 완료할가는 허가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거. 피고는 2016. 7.경 제주도 건축계획 심의 기준과 심의도면 작성기준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여 건축법 제4조의 2 제1항 규정의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고, 2016. 7. 26.경 '한국표준색상표로 색채를 표기 바란다'는 종합의견으로 조건부동의를 받아 건축심의(이하 '이 사건 건축심의'라고 한다)를 통과하였다.

너. 피고는 2020. 5. 11.경 D에게 “~~우리도 사실 손해를 많이 본 상황이지만, 이 프로젝트에 인발브했던 사람들이 모두 손해를 보고 끝난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음, D씨 만나서 입장을 들어보니 D씨 입장도 이해는 되고, 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마냥 우리도 손해를 봤다고만 이야기하기도 그래서 성의 표시정도는 할 생각이니 D씨가 생각하는 금액을 알려주길 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고 한다)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13, 15호증의 각1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분묘들의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할 것처럼 속이고 원고가 건축비만 부담하면 피고가 제1, 2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부터 분양업무까지 맡아서 진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 사건 설계계약은 피고가 단순히 설계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업무를 내용으로 한 것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토지가 원고 소유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는 건축사로서 제1, 2건물 부지에 관한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성실의무 또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1, 2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1, 2건물의 시행업무에 착수하였다가 결국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 업무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건축심의도 조건부동의를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명백하므로 심의완료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던 중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을 해제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손해배상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합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 합계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4) 또한 피고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속이고 위 계약금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손해배상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5) 피고가 반소로서 구하는 건축심의 통과 대가금 합계 5,280만 원의 채무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심의 통과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설계계약은 제1, 2건물의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일 뿐이고, 원고가 건축주로서 제1, 2건물의 부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설계대상 신축건물 부지의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건축사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 2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설계계약의 특약사항도 원고가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무연고 분묘의 이장절차를 맡기로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오히려 제1, 2토지의 소유자라는 취지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가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3) 또한 피고가 제1, 2건물을 위한 도로 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매입대상 토지를 알려주었으나 원고가 도로 매입을 위한 계약진행을 거부하고 있어 도로매입 업무도 원고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제2건물에 관한 계약금 400만 원을 계약 후 7일 이내에,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인 이 사건 건축심의 대가를 건축심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위 계약금과 건축심의 대가 지급 이행을 반소로써 청구한다. 한편 원고가 제1, 2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그 매입절차 완료를 기다릴 수 밖에 없어 위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위 대가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 2토지 매입 실패가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시효중단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거래관행상 피고가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원고의 책임전가를 위한 소제기이므로 원고의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제2건물에 관한 계약금 400만 원을 계약 후 7일 이내에, 이 사건 건축심의 대가를 건축심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각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설계업무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가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도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원고가 위 건축심의 대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던 중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 해제를 주장함으로써 위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고 없이 이 사건 설계계약을 해제하고,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이 사건 건축심의 대가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이행을 예비적 반소로써 구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계약은 제1, 2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거기에 특약사항이 보태어진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의 내용으로 제1, 2건물의 시행업무를 맡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5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갑 제16호증인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피고가 D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의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4,000만 원 중 일부를 반환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갑 제16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분묘들의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할 것처럼 속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도가 있었던 점, D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하여 부친인 아버지를 설득할 필요가 있었던 점, D이 개발사업을 주로 진행하였고, 이 사건 안내문도 D이 P에게 부탁하여 설치한 점, 이 사건 설계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묘지이전 절차 완료 기간을 3개월로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분묘들이 무연고 분묘로서 그 이장절차만 밟으면 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제주 H동 공동주택 사업의 시행자였고, 피고는 단지 설계용역만 담당하기로 한 것이며, F와 G은 제1, 2토지가 원고 소유가 아닌 점을 몰랐고, D은 이 사건 분묘들에 대하여 단순히 무연고 분묘라고 말하여 무연고 분묘 이장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G이 설계를 진행하던 중 제1, 2토지가 원고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어 모든 일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인 을 제13호증의 기재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피고가 이 사건 분묘들의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할 것처럼 속인 것이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제1, 2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을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건축설계업체이고, 그 대표자인 G이 건축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에게 관계법령상 제1, 2건물 부지에 관한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성실의무 또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 당시 제1, 2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인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1,

2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그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설계업무를 중단한 것이 이행지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이행을 지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제2건물에 관한 계약금 400만 원을 계약 후 7일 이내인 2016. 6. 17.까지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또한 이 사건 건축심의는 비록 조건부 동의로 이루어졌으나, 그 조건은 ‘한국표준색상표로 색채를 표기 바란다’는 경미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축심의는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심의 완료일인 2016. 7. 26.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8. 2.까지 그 대가인 합계 4,8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2)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설계계약 중 용역대금 지급시기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설계계약 중 제2건물에 관한 계약금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일은 2016. 6. 17.이고, 이 사건 건축심의 대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16. 8. 2.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용역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각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3)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제2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시효중단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거나, 거래관행상 피고가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8.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심의 대가를 지급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지체하던 중, 피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지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 해제를 주장함으로써 위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최고 없이 원고의 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로써 한 이 사건 설계계약의 해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 중 제2건물에 관한 계약금과 이 사건 건축심의 대가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합계 5,2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계약해제 이후 최초 청구일 다음날, 즉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에서의 주장과 반소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별표1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지 불 금 액	비 고
계 약 시(20%)	일금사천만원 (₩40,000,000원)	계약후 7일 이내
건축심의완료시(20%)	일금사천만원 (₩40,000,000원)	심의완료후 7일 이내
허가완료시(20%)	일금사천만원 (₩40,000,000원)	건축허가 완료 후 7일 이내
실시설계납품시(30%)	일금육천만원 (₩60,000,000원)	실시설계 제출 후 7일 이내
사용승인완료 및 준공도면,서류납품시(10%)	일금이천만원 (₩20,000,000원)	사용승인완료 후 7일 이내
계(100)	일금이억원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끝.

별표2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지 불 금 액	비 고
계 약 시(20%)	일금사백만원 (₩4,000,000원)	계약후 7일 이내
건축심의완료시(20%)	일금사백만원 (₩4,000,000원)	심의완료후 7일 이내
허가완료시(20%)	일금사백만원 (₩4,000,000원)	건축허가 완료 후 7일 이내
실시설계납품시(30%)	일금육백만원 (₩6,000,000원)	실시설계 제출 후 7일 이내
사용승인완료 및 준공도면,서류납품시(10%)	일금이백만원 (₩2,000,000원)	사용승인완료 후 7일 이내
계(100)	일금이천만원 (₩2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끝.